

부산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54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5462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18가합424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송문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손예린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5. 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18가합424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588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88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등 공사를 도급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C회사와 피고는 2016. 10. 10. C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6.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등 수급인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1. 28. 추가공사도급계약까지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원고는 2016. 11. 28. 무렵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각 등기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도급 등 사실만으로 원고가 C회사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더 나아가 C회사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과 C회사는 2016. 4. 7. C회사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등 공사를 대금 4억 6,31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사대금 및 변제금액 등으로 인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2016. 5. 3. C회사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견적 이외의 추가 공사를 대금 1억 3,7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와 C회사는 위 각 계약에 따른 D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관할관청이 2016. 9.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8. 무렵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C회사에 대하여 위 각 공사대금 합계 6억 60만 원(= 4억 6,310만 원 + 1억 3,750만 원)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변제금 4억 832만 원, 하자보수비 8,6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88만 원(= 6억 60만 원 - 4억 832만 원 - 8,640만 원)의 채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창호공사 및 계단실 내부 바닥, 벽체공사로 인한 하자로 재시공비용 6,110만 원¹⁾ 상당이 필요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하자 및 재시공비용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C회사가 2016. 1. 18. D에게 1,21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C회사가 위 일시에 D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지급된 점, 원고가 D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는 계약금이 지급된 사정이

반영되어 공사대금에서 ‘1차 착수금’이 제외되어 있는 반면, 위 금액 상당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회사의 금전 지급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게 2,07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지급 당시 원고는 D이 피고 등으로부터 수급한 다른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금전 지급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끝으로 피고는, C회사가 2016. 6. 2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C회사가 위 일시에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지급 당시 원고는 D이 피고 등으로부터 수급한 다른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회사의 금전 지급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C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C회사 대표자(사내이사 E)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C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회사가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회사가 피고 주장과 같이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인 1억 588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억 5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민, 판사 박진웅, 판사 최희영

별지

1)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 1억 4,750만 원 중 원고가 인정하는 8,64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